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1월 10일

나. 발 의 자: 최세진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 11. 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세진 의원)

□ 제안이유

관내 거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안 제5조 ~ 제6조)

라. 효율적인 사무 추진을 위한 위탁 및 지도·감독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사업 수행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 지원(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나. 협조부서: 교육지원과
- 다. 입법예고(2023. 11. 10. ~ 2023. 11. 14.)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느린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 독려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제정안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안 제3조**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
- **안 제5조 ~ 6조**는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사례관리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7조 ~ 8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는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경계성지능, 느린학습자 등으로 통칭되는¹⁾ 일부 학습자들은 대인 관계나 학습 능력, 문해력, 인지능력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압박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지원이 요구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 지원정책에서 소홀하게 다뤄져 왔음.
-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월 20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국회에서도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²⁾이 발의되는 등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제정이라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1)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
- 1994년 미국 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발간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의 경계선지능 판단기준과 지능의 정규 분포를 고려할 때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강서구 소재 경계선지능인 약 7만 7천명(56만 9천명*13.59%)으로 추정 _ 2023. 1월 기준

2)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명 발의, 2023.2.14.)

□ 「**평생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